

# 이사회 운영

## 이사회운영 규정

(개정 2019.12.13.)

제정 1998. 2.10.

개정 2011. 1.12.

개정 2019.12.13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한소프트테니스협회(이하 본회라 한다) 정관 제14조에 따라 이사회 의 구성, 임원, 소집,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위 및 의결사항) 이사회는 본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집행 기관으로 정관 제14조에 정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제3조(구성) 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발언권과 의결권은 없다.

제4조(의장) ① 회장은 이사회 의 의장이 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순서에 의한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.

② 의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,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, 의사를 집행한다.

제5조(소집) 이사회 의 소집요구, 소집절차 및 소집 장소에 관하여는 정관에 따른다.

제6조(안건 부의)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을 늦어도 회의개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이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7조(의사진행과 발언) 이사회 의 의사진행과 발언에 관하여는 총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제8조(안건심의) 이사회 의 안건심의에 관하여는 총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.

제9조(회의록) ① 이사회 회의록 작성에 관하여는 총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.

② 회의록은 다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는다.

제10조(비공개 회의) 이사회 의 질서와 소신 발언을 위하여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.

부 칙(1998. 2. 10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1998. 2. 10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. 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의결된 211. 1. 12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9. 12. 13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본회 종목 명칭 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된 2019. 12. 13.  
부터 시행한다.